

# 웰뱅 워킹 적금 상품설명서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137호 (2026.01.16 ~ 2027.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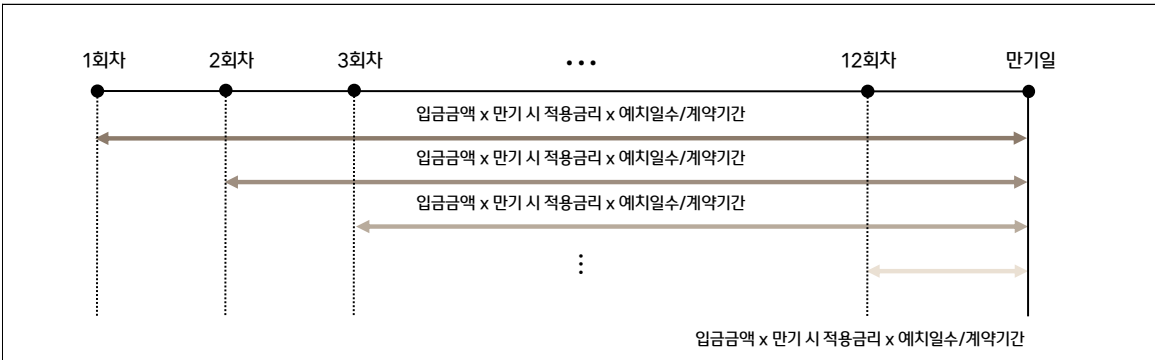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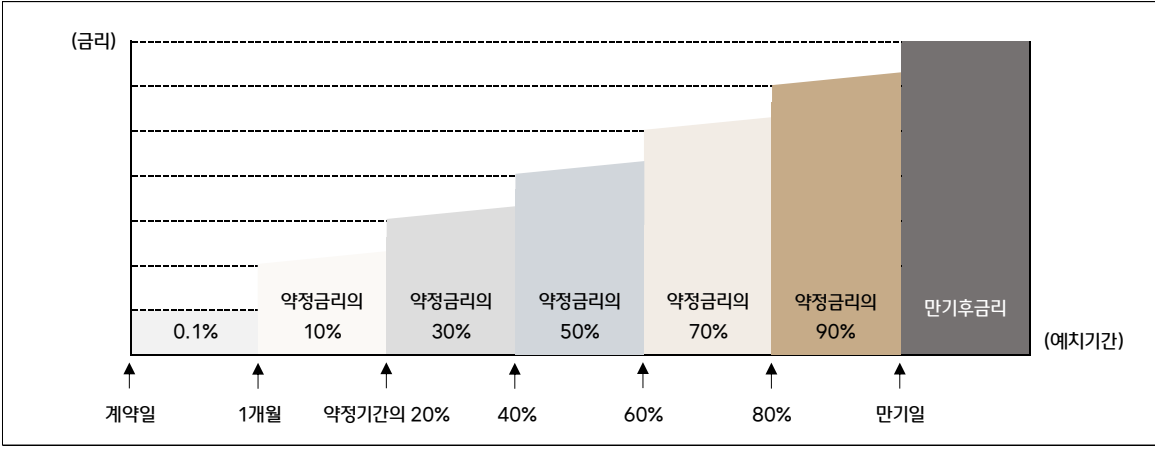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웰뱅 워킹 적금
- 특징: 상품가입기간 내 걸음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

## 2. 주요내용

예금과목	• 정기적금																					
가입대상	• 개인																					
가입경로	• 모바일뱅킹																					
계약기간	• 12개월																					
가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매월 동일금액)																					
이자지급시기	• 만기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에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li> <li>• 질권 설정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li> <li>•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li> <li>•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신규 개설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li> <li>• 1인 1계좌</li> </ul>																					
금리	•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 <span style="float: right;">[세전 기준]</span>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연금리</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금리</td> <td>12개월</td> <td>1.00%</td> </tr> <tr> <td rowspan="4">우대금리 (만기해지시지급)</td> <td rowspan="4">조건1) 연간 걸음수 달성 여부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신규일 ~ 계약상 만기일 전일까지)</td> <td>1백만보 이상</td> <td>1.00%p</td> </tr> <tr> <td>2백만보 이상</td> <td>2.00%p</td> </tr> <tr> <td>3백만보 이상</td> <td>3.00%p</td> </tr> <tr> <td>4백만보 이상</td> <td>6.00%p</td> </tr> <tr> <td></td> <td>조건2) 6회 이상 당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td> <td>1.00%p</td> </tr> </tbody> </table>			구 분		연금리	기본금리	12개월	1.00%	우대금리 (만기해지시지급)	조건1) 연간 걸음수 달성 여부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신규일 ~ 계약상 만기일 전일까지)	1백만보 이상	1.00%p	2백만보 이상	2.00%p	3백만보 이상	3.00%p	4백만보 이상	6.00%p		조건2) 6회 이상 당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	1.00%p
구 분		연금리																				
기본금리	12개월	1.00%																				
우대금리 (만기해지시지급)	조건1) 연간 걸음수 달성 여부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신규일 ~ 계약상 만기일 전일까지)	1백만보 이상	1.00%p																			
		2백만보 이상	2.00%p																			
		3백만보 이상	3.00%p																			
		4백만보 이상	6.00%p																			
	조건2) 6회 이상 당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1 적용을 위해 웰컴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걸음수 산정 서비스인 "웰뱅 워킹 서비스" 가입이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서비스는 본인명의 휴대폰일 경우에만 이용 가능</li> <li>2) 적금 가입기간 내 웰뱅 워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서비스에서 탈퇴하여 실적 집계가 불가한 경우, 우대이율 적용이 불가</li> <li>3) 적금 가입 이전 및 만기일 당일 달성한 실적은 실적에서 제외</li> </ol> </li> <li>- 조건1의 실적 인정기간(만기해지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상 만기일 또는 만기일 경과 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 만기일 전일까지의 실적</li> <li>2) 만기앞당김 해지 또는 계약상만기일이 주말 및 공휴일로 직전 영업일 해지하는 경우: 신규일로부터 만기해지전일까지의 실적</li> </ol> </li> <li>- 조건2는 계약기간 이내 입금된 실적에 한하며, 첫회 납입액은 실적 인정 기준에서 제외</li> </ul>																					

금리적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지 시 금리 = 기본금리 1.0% + 우대조건1 4백만보 이상 (6.0%p) + 우대조건2 자동이체 납입 (1.0%p) = 8.0% 적용</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107 1469 159"> <tr> <td>신규일</td> <td>25.06.14</td> <td>계약상만기일</td> <td>26.06.14</td> <td>(신규~계약상만기일전일)결음수</td> <td>410만보</td> <td>자동이체</td> <td>9회</td> </tr> </table> <p>- 실적인정기간은 신규일인 25.06.14.부터 계약상만기일 전일인 25.06.13.까지이며 만기일 및 해지일 당일 달성한 실적은 실적에서 제외</p>	신규일	25.06.14	계약상만기일	26.06.14	(신규~계약상만기일전일)결음수	410만보	자동이체	9회								
신규일	25.06.14	계약상만기일	26.06.14	(신규~계약상만기일전일)결음수	410만보	자동이체	9회										
만기후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경과기간별 만기후금리 적용</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241 1469 383"> <thead> <tr> <th>구분</th> <th>적용금리</th> </tr> </thead> <tbody> <tr> <td>1개월 이하</td> <td>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 동일상품-계약기간(없을 시, 가입 당시 약정금리)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td> </tr> <tr> <td>1개월 초과</td> <td>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 후 1개월 초과 시 금리</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금리	1개월 이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 동일상품-계약기간(없을 시, 가입 당시 약정금리)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1개월 초과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 후 1개월 초과 시 금리										
구분	적용금리																
1개월 이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 동일상품-계약기간(없을 시, 가입 당시 약정금리)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1개월 초과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 후 1개월 초과 시 금리																
만기이자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자계산방법 =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x 만기 시 적용금리 x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li> <li>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 시 적용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li> </ul> 																
중도해지금리 및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금리 적용</li> <li>만기 이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금리보다 낮은 <b>중도해지금리 적용</b></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949 1469 1249"> <thead> <tr> <th>예치기간</th> <th>중도해지금리</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약정기간의 80% 이상</td> <td>약정금리의 90%</td> <td rowspan="6">전구간 0.1% 보장</td> </tr> <tr> <td>약정기간의 60% 이상</td> <td>약정금리의 70%</td> </tr> <tr> <td>약정기간의 40% 이상</td> <td>약정금리의 50%</td> </tr> <tr> <td>약정기간의 20% 이상</td> <td>약정금리의 30%</td> </tr> <tr> <td>약정기간의 20% 미만</td> <td>약정금리의 10%</td> </tr> <tr> <td>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td> <td>0.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도해지금리 계산방법 <span style="color: red;">아래 그림은 중도해지금리를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 적용되는 중도해지금리는 실제 가입기간 및 예치기간에 따라 적용</span></li> </ul> 	예치기간	중도해지금리	비고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전구간 0.1% 보장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0.1%
예치기간	중도해지금리	비고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전구간 0.1% 보장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0.1%																
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li> <li>*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li> </ul>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li> <li>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li> <li>-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li> <li>-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li> <li>-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li> </ul>																

분할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가</li> </ul>
만기앞당김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앞당김지급 가능</li> <li>• 단, 만기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 후 지급</li> </ul>
만기자동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계좌(타행포함)로 이체</li> <li>•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해지</li> </ul>
자동재연장(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청 가능</b> (단, 당행 입출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함)</li> <li>• 자동재예치 신청 계좌일 경우, (이연)만기일에 <b>최초 가입한 적금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동일 계약기간, 동일 월불입액</b>으로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적금의 최초 월불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당행 입출금 계좌로 입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세후 원리금 : 1,216,500원, 재예치 첫 회 불입액 : 100,000원, 입금액 : 1,116,500원</li> <li>- <b>약정납입회차를 모두 납입한 계좌에 한해서만 자동재예치가 적용되며, 중도해지 대상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음</b></li> </ul> </li> <li>• 재예치일 : 적금 만기일(지연일자가 있을 경우 이연만기일)에 자동재예치되며,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 재예치</li> <li>• <b>재예치 된 적금의 기본이율, 우대이율 및 우대 조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예치일 기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율 및 우대조건이 적용되므로, <b>최초 가입한 적금의 이율 및 우대조건과 달라질 수 있음</b></li> <li>- 재예치 된 상품에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 우대조건 달성 여부는 재예치 시점부터 산정한 실적으로 반영됨</li> </ul> </li> <li>• <b>재예치 불가 사유</b> : ① 적금에 질권설정 또는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등 지급에 제한이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세후 원리금 입금될 입출금계좌에 입금이 제한되어 있거나 해지된 경우</li> <li>③ 동일상품이 없거나(판매중단, 한도소진 등), 동일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동일 월불입액으로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li> <li>④ 자동이체 날짜를 약정납입일(=신규일자)과 다르게 변경하였거나, 적금에 신청된 자동이체가 2건 이상인 경우</li> </ul> </li> <li>• 자동재예치 적용예시 <div data-bbox="311 918 1476 1366" data-label="Diagram"> <p>* 신규개설 시 계약기간 12개월, 월불입액 1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 12개월(동일 계약기간) 단위로 재예치되며, 월불입액은 10만원(동일 월불입액) 고정</p> </div> </li> </ul>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시 고객은 <b>일정 기간 이내에</b>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b>계약 해지를 요구</b>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b>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b>하고 거절 시에는 <b>거절사유와 함께 통지</b></li> <li>•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li> </ul>
자료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li> <li>•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li> <li>•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연계·제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 3. 유의사항

- 이 적금은 웰빙 워킹 서비스를 통해 기록된 걸음수를 기준으로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걸음수 업데이트를 위해 웰빙 워킹 서비스 화면 접속이 필요합니다. 5일마다 1회 이상 웰빙 워킹 화면에 접속하여 걸음수를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웰빙 워킹 서비스에서 기록된 걸음수는 걸음수 측정 방식의 차이로 다른 기기 어플리케이션의 걸음수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걸음수 연동 또는 오류 문의는 런데이(02-861-4417, 평일 10시 ~ 17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 시 걸음수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단, 실적 인정 기간 내 상속받으시는 분의 걸음수가 웰빙 워킹을 통해 기록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비대면채널을 통한 예금해지는 영업일 00:10 ~ 23:50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만기지급금에서 ①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365 x 입금지연이율 [=약정이율 + 0%]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월수
- 당행은 입금지연에 따른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별도의 가산이율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 1항, 동 법 시행령 제 14조제 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설명의무 이행 확인 필요 고객님(만 65세 이상, 미성년자 등)은 설명 내용 확인 및 서명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품 정보 관련 고객 안내사항 설명 확인서

※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 **예금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약정금리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중도해지금리 및 계산방법"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② 본인은 웰컴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 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③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됨을 설명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예금주: (서명/인)  
대리인: (서명/인)

※ 금융용어 설명

용어	내용
압류	국가가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질권설정	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